

시험 · 검사성적서

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· 검사기관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|
| 발행번호 | R20181023-0127 | | 접수번호 | 180103039-001 | | |
| 검사완료일 | 2018-10-23 | | 접수연월일 | 2018-10-17 | | |
| 제품명 | 청경채(시민신청 방10-17-1) | | | | | |
| (품목)제조번호 | | | 품목제조신고번호 | | | |
| 유형 · 재질 · 품목명 | 청경채 | | | | | |
| 제조(수입)일 | 2018-10-16 | | 유통(품질유지)기한 | 2018-10-19 | | |
| 의뢰자 | 성명 | 강지영 | | 업체명 | 강지영 | |
| | 소재지 | 전화번호: 02 - 2133 - 4727 팩스번호: 전자우편: nova0815@seoul.go.kr | | | | |
| 제조원 | 업체명 | | | | 제조국 | KR |
| | 소재지 | | | | | |
| 시험 · 검사목적 | 식품 수거검사 | | | | | |
| 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 | | | | | | |
| 시험 · 검사 항목 | 시험 · 검사 기준 | 시험 · 검사 결과 | 판정 | 비고 | | |
| 131I(Bq/kg) | 300 이하 | 0 | 적합 | | | |
| 134Cs + 137Cs(Bq/kg) | 100 이하 | 0 | 적합 | | | |

종합판정 : 적합

시험검사원 : 김옥희(02-570-3246)

시험검사책임자 : 윤은선

- ※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 · 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.
- ※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.
- ※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· 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 · 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「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 ·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



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

T:02-570-3246

F:02-570-3248

시험 · 검사성적서

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· 검사기관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발행번호 | R20181023-0126 | | 접수번호 | 180103040-001 | |
| 검사완료일 | 2018-10-23 | | 접수연월일 | 2018-10-17 | |
| 제품명 | 쌀(시민신청 10-17-2) | | | | |
| (품목)제조번호 | | | 품목제조신고번호 | | |
| 유형 · 재질 · 품목명 | 쌀 | | | | |
| 제조(수입)일 | 2018-09-30 | | 유통(품질유지)기한 | | |
| 의뢰자 | 성명 | 강지영 | | 업체명 | 강지영 |
| | 소재지 | 전화번호: 02 - 2133 - 4727 팩스번호: 전자우편: nova0815@seoul.go.kr | | | |
| 제조원 | 업체명 | 강서농협하나로마트 | | 제조국 | KR |
| | 소재지 | | | | |
| 시험 · 검사목적 | 식품 수거검사 | | | | |
| 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 | | | | | |
| 시험 · 검사 항목 | 시험 · 검사 기준 | 시험 · 검사 결과 | 판정 | 비고 | |
| 131I(Bq/kg) | 300 이하 | 0 | 적합 | | |
| 134Cs + 137Cs(Bq/kg) | 100 이하 | 0 | 적합 | | |

종합판정 : 적합

시험검사원 : 김옥희(02-570-3246)

시험검사책임자 : 윤은선

- ※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 · 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.
- ※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.
- ※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· 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 · 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「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 ·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



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

T:02-570-3246

F:02-570-3248

